

● 제299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
제2차 운영위원회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2021. 3. 4.

운 영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가. 제안자 : 정진술 의원(고병국 의원 등 11명 찬성)

나. 제안일 : 2021. 2. 5.

다. 회부일 : 2021. 2. 9.

라. 의안번호 : 2207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2020년 12월 9일 ‘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’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4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 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.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선희)

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

- 본 개정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「지방자치법」(법률 제 17893호, 2021. 1. 12. 전부개정)의 내용을 반영하여 의회의 의정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와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되었음.

2 전부개정된 「지방자치법」 중 ‘주민에 대한 정보공개’ 조문 신설 목적과 취지

- 본 개정안이 개정 근거로 삼고 있는 「지방자치법」¹⁾(2022. 1. 13. 시행)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어 있음(제26조).²⁾
-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정보공개법”)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해왔음.
- 그럼에도 불구하고 「지방자치법」에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조문을 신설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기준으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주민의 정보 격차를 방지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임.³⁾

1) 해당 「지방자치법」은 2020년 7월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‘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’ 등 31건의 법률안 내용을 통합·조정한 위원회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 1월 12일 공포된 법임.

2) 제26조(주민에 대한 정보공개)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, 집행기관의 조직,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(이하 “지방자치정보”라 한다)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의 지방자치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- 즉, 해당 조문 신설은 정보 공개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여 지역별 편차 없이 지방자치단체 정보를 공개하려는 목적을 가짐.
- 이러한 목적은 같은 조 제2항에서 명시한 ‘정보공개시스템’ 구축·운영 규정에서도 확인 가능함.

3 **의회의 의정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함(안 제4조의2)**

- 현행 「지방자치법」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에 관한 별도의 조문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「정보공개법」에 따라 조례로써 주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음.⁴⁾
- 17개 광역의회의 경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외에도 개별 조례와 회의 규칙을 통하여 의정활동 정보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(붙임자료 참조),
- 특히 서울특별시의회는 ▶위원회와 본회의 회의록, ▶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비롯하여 선제적으로 ▶계약투명성 심의회 회의록, ▶공무국외활동 계획 및 결과, ▶연간 공무국외활동 기본계획, ▶의회 출석일수, ▶국내외 활동보고서, ▶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내역, ▶업무추진비 사용내역, ▶연구용역 기본계획 및 결과물과 평가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정하였음.

3)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(2020.9.)에서 “특히 자치사무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,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보가 지역별 편차 없이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였” 다고 밝힘.

4) 제4조(적용 범위)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.
 ③ 생략

- 따라서 「지방자치법」에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조문을 신설한 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선언적 의미에 가까우며⁵⁾, 현행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에 시민에 대한 의정활동 정보공개 조문을 신설하는 것 역시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.
- 다만 ‘정보공개시스템’(「지방자치법」(2021. 1. 13. 시행) 제26조제2항) 구축·운영과 관련하여, 이번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 취지의 주축 중 하나인 주민자치 실현에 부합할 수 있도록,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(의회)의 정보공개 범위와 과정 등 시스템 구축 전반에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정보공개에 대한 각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.

5)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총괄 담당에게 확인(확인일자: 2021. 2 .16., 044-205-3307).

붙임자료

**17개 광역의회가 조례·의회규칙으로써
공개하기로 정한 의정활동 정보**

지역	조례·의회규칙으로써 공개하기로 정한 의정활동 정보	
공동	-위원회와 본회의 회의록 -다른 기관·단체로부터 여비·활동비 등을 지원받은 국내·외 활동 보고서 -행정사무감사·조사	
서울	-계약투명성 심의회 회의록 -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-공무국외활동 계획 및 결과 -연간 공무국외활동 기본계획 -의회 출석일수	-교섭단체 각종 사업비 사용내역 -업무추진비 사용내역 -연구용역 기본계획 -연구용역 결과물과 평가 결과
부산	-업무추진비 사용내역	-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
대구	-교섭단체 각종 사업비 사용내역 -업무추진비 사용내역	-민원 신청 및 진행현황, 안내 자료 -민원인이 공개를 동의한 민원사례
인천	-교섭단체 각종 사업비 사용내역	-업무추진비 사용내역
광주	-업무추진비 사용내역 *기본 조례에 의정활동 정보 공개 조항 있음.	
대전	-교섭단체 각종 사업비 사용내역	
울산	-업무추진비 사용내역	-민원 신청 및 진행현황, 안내 자료 -민원인이 공개를 동의한 민원사례
세종	-교섭단체 각종 사업비 사용내역	
경기	-업무추진비 사용내역 -병역사항	-연구용역 결과보고서 -국내·외 활동보고서
강원	-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	
충북	-	
충남	-업무추진비 사용내역	-국외활동결과보고서
전북	-업무추진비 사용내역	
전남	-업무추진비 사용내역 -연구단체·위원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용역 최종 성과품 -국외활동결과보고서	
경북	-교섭단체 각종 사업비 사용내역	-업무추진비 사용내역
경남	-검직신고내역	
제주	-업무추진비 사용내역	-교육 이수실적

*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검색되는 조례와 의회규칙을 대상으로 함(검색일자: 2020. 2. 16., 검색어: 광역의 회명, “공개”)

**의회운영원칙 공개 조항은 포함하지 않음.

***자치법규로써 공개하기로 정했지만 실제로는 미공개 중인 정보도 포함될 수 있음.

****정보공개 청구 제도와 관련된 의정활동 정보는 제외함.